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9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 김우영·송재봉·김성환

황명선 · 김동아 · 양문석

김남희 • 이재강 • 이해민

정동영 · 박민규 · 김문수

조인철 · 차지호 · 윤종군

김남근 • 문금주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의 월 권행위 내지 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 심의위 원장의 독단·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장의 월권 내지 권한 남용행위를 막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해 '심

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로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법률상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듦.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심의위원장의 위헌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상임인 심의위원을 정무직 심의위원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18조의2 신설), 심의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직무 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또한, 특정 정파에 경도된 불합리한 심의위원 구성 행태를 개선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일정 기간 내 심의위원 추천과 추천후 일정기간 경과 후 즉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동위촉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제18조의3 신설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설치 등"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 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인 위원 3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3(위촉 등) ①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심의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1인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2인을 위촉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교섭단체로 부터 각각 2인을 추천 받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 추천은 임기 종료 14일 전까지 하여야한다. 다만,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구성 또는 개회 불가, 대법원장의 임명 지체 등 정당한 사유없이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은위원의 수는 제22조제3항의 구성 정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대통령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위촉하지 아니 하면 그 다음 날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⑤ 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심의위원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심의위원으로 하고, 그 외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심의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⑥ 심의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심의위원장)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 ② 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 행한다.
-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18조의5(심의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 심의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u>설</u>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u>설</u>
<u>치 등)</u> ① (생 략)	<u>치)</u>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	<u><삭 제></u>
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	
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	
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	<u><삭 제></u>
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	
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	
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	
람을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	<u><삭 제></u>
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u><삭 제></u>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 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 <삭 제>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삭 제></u>

제18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 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 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인 위원 3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 다.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위촉 등) ① 심의위원

<신 설>

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심의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1인과 대 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2인을 위촉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 은 정당의 교섭단체로 부터 각 각 2인을 추천 받아 국회의 소 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 람을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 추천은 임기 종료 14일 전까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구성 또는 개회 불가, 대법원장의 임명 지체등 정당한 사유없이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은 위원의 수는 제22조제3항의 구성 정원의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5조제1항 각호 중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1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촉하여야하며, 이 기간 내에 위촉하하지 아니 하면 그 다음 날에위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심의위원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교섭단체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심의위원으로 하고, 그 외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심의위원 중에 호선한다.

⑥ 심의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심의위원장) ① 심의위 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신 설>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 ② 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 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 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 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 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18조의5(심의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수 있다.
 - ② 심의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 심의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